

 기획재정부		보도해명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19. 10. 18.(금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양순필 (044-215-4330)	담당자	안재영 사무관 (044-215-4333)
	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박찬기 (044-203-5170)		박영진 사무관(044-203-5174)

‘19. 10. 18일(금) 문화일보(식간)
「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」 기사 관련

< 언론 보도내용 >

- ☐ ‘19. 10. 18.(금) 문화일보(식간)는 「한전 脫원전 적자’ 세제 개편으로 메꾸기?... ‘꼼수’ 논란」 제하 기사에서
 - “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”된다고 보도

< 정부 입장 >

- ☐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료별 상대가격에 반영*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
 - * 유연탄·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(=약 2:1)에 맞춰 개소세·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 조정 (유연탄: 36→46원, LNG: 91.4→23원)

- ‘17.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*된 이후 ‘17.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·추진된 사안입니다.
 - * 국정과제 60-3번: ‘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’하고,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
 - 이후 정부는 「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(조세연, ‘17.9.29.~’18.5.31.)」 용역에 착수 하였고,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‘18년 정기세법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- ☐ 또한,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「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(‘14~’18, 전부처)」로 발표*(‘14.6월)된 후, 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(‘18.7월)에도 포함될 만큼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,
 - * (과제 2-1-1)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: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,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
-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